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서울)유안타저축은행

2. 조치일 : 2024. 2. 29.

3. 조치내용

대상	내 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대주주와의 정보공유 제한 및 통제체계 마련

유안타저축은행이 검사착수일 현재 주요 경영현황, 현안과 기획 등을 대주주(유안타상업은행㈜)에게 보고하여 의견을 구한 후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보는 관련 법령상 주주의 권리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범위의 정보가 아니므로,

앞으로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 방법, 내용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통제체계를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여신·투자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유안타저축은행은 2016.8.19. ~ 2023.8.11. 기간 중 여신·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여신·투자 취급·실행을 심사하면서 차주사의 신용도, 담보물 환가성, 채권보전조치 미흡 등 리스크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여신·투자 취급·실행을 승인하였으므로,

앞으로 여신·투자 결정과 관련하여 위험요인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여신·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자체 여신·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여신편중 리스크관리 강화

유안타저축은행은 검사기준일 현재 PF대출, 건설업, 부동산업 관련 대출액이 총 여신의 44.8%를 차지하며, 업종분류 대상이 아닌 개인중도금대출 등의 비중이 높으므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여신편중 리스크를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위험관리위원회에서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 이를 고려하는 등 여신편중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PF대출 사업성 평가 및 충당금 적립 강화

유안타저축은행은 PF대출 취급시 사업수지표에 근거하여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대출 취급 이후에는 공정지연 등의 사유로 총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익성을 재평가하지 않고 있고, PF대출을 일반대출로 분류하거나, 일부 사업장의 공정 진행률을 과대평가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대출 취급시 PF대출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PF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적정한 수준의 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5) 토지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등 관리 강화

2023.6월말 현재 유안타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중 만기 연장 비중 등이 높아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나 사업지연으로 인한 고정화, 부실화 등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 및 연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채권회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개선사항

(1) 여신 및 투자 심사절차 개선

유안타저축은행은 검사착수일 현재 여신·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여신·투자 건에 대해 대표이사가 실행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대주주가 여신·투자 실행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여신·투자 실행을 취소하거나 실행액을 감액하고 품의서에 감액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앞으로 여신·투자심사시 내규에서 정한 자체 심의기구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행 여부를 결정하고, 여신·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 이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품의서 등에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등 여신·투자심사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